

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폐지이유

-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한 보호기금의 설치·적립은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, 광역시 및 도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과 불일치
-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'64년부터 '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된 기금 운영실적이 전무 (원금 624천원)

☐ 주요골자

“ 동조례 폐지 ”

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